第2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10.6.28.~6.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개회식 ····· 121

Ⅱ.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23

Ⅲ.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35

Ⅳ. 부 록

1. 의사일정안 ····· 149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 151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 159
4.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3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3
6.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7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5
8.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3
9.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9
10. 조례심사보고서 ····· 215
11. 심사보고서 ····· 23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4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곽종수)

(11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곽종수**

지금부터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第24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4.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정무 위원 외 6인)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정무 위원 외 6인)
5.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0.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2.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곽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6월 21일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18일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정무 교육위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곽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6월 29일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6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11시 06분)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0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또한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외 12건의 조례는 그 제명과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별첨 3)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정수**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10분)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정수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 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

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 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교육청 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와 관련된 별표에 지역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시 초등교육과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10조, 제1호 개정 부분은 연구(실험 시범)학교에서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반영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사업은 본청으로 이관하며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감사업무를 환수하여 본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시 시설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문구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된 부분인 전면개축, 전면 리모델링, 주요정책사업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6)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본교에 통합 운영하고 초등학교 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원아가 없어 휴원중인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7)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새터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과 경덕중학교 다목적실 증축에 따른 변경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새터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1,700㎡, 경덕중학교의 당초 급식소 신축 1,062㎡에서 다목적실 1,494㎡를 추가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8)

(끝에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결과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9,360억 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조 6,281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78억 9,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94억 9,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 9,500만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362억 5,500만원 중 수납액은 99.9%인 1조 9,360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 수납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6,281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4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0.3%인 1,984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관리시스템 오류정정 및 공·사립 학교간 재정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10억 3,300만원을 부득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보다 13억 9,800만원이 증가한 491억 1,300만원이며 내용은 전세권,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등입니다.

4쪽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차입금으로 2009년도 중에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873억 1,100만원이 발생하고 상환 소멸액은

없어 2009년도말 현재 87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60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19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09년도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 4,699억 1,400만원, 부채 2,622억 7,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076억 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1조 5,138억 3,8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4,161억 1,2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977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38억 7,384만원 중 2009년도 구상금 지급 등 11건의 사업비로 26억 7,58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2,681만원을 집행하고 9,057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 5,8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정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n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9)

(끝에 실음)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별책 1)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2)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별책 3)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보고서(별책 4)

● 의장 곽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4분)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교육위원 발의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김병우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별첨 2)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별첨 3)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5)
-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6)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7)
-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8)
-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9)

※ 별 책 부 록

1.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개요
2.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4.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정무 위원 외 6인)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정무 위원 외 6인)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8.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김병우 위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서수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1일 정무 교육위원 외 6인의 발의에 의한 안건과 2010년 6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6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는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다른 조례폐지 및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 개정을 부칙으로 정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례를 일괄 정리한 것으로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을 대표 발의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신분증규칙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을 부칙으로 정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규칙을 일괄 정리한 것으로 동 폐지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5조 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제1호를 보완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업무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를 재조정하였고 별표2부터 별표6에서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관할 교육청 란을 삭제하는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5호에서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삭제 교육장의 관할 학교 감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본청 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소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남일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이 없어 휴원 중이며 두산분교 2010년 6월 현재 재학생은 3명으로 통학구역 내 취학대상 아동수가 적어 더 이상 학생 증가요인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10)
(끝에 실음)

● **의장 곽정수**

서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1분)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현장방문과 심도있게 협의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12분)

● **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6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8.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 9,360억 5,482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1%에 해당되는 1조 6,281억 6,011만 3,000원으로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3,078억 9,4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1,040억 62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4억 8,628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57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983억 9,561만 1,000원은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9,360억 5,48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9,362억 5,558만 6,000원 대비해서 99.9%를 징수한 것이며 예산현액 1조 9,361억 4,187만 8,000원 대비에 99.9%를 수납

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7,870억 1,897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91억 2,290만 6,000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조 9,361억 4,187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4%가 증가한 1조 6,281억 6,01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1%를 집행한 것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094억 9,252만 7,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양청고등학교 신설비 등 101건에 1,040억 624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제천여고 기숙사 증축사업비 등 10건에 54억 8,628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984억 8,923만 8,000원이 발생되었고, 전년도 불용액 2,073억 705만 8,000원보다 4.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0억 3,3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14억 2,302만 5,000원 대비 27.3%인 3억 8,91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9년도에 81억 9,982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68억 157만 8,000원이 소멸되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77억 1,478만 2,000원 대비 2.9%인 13억 9,982만 7,000원이 증가한 491억 1,303만 1,000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873억 1,134만원으로 이는 '09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써 추후 교부금으로 보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조 2,028억 9,977만 1,000원 대비 8.0%인 2,575억 4,583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4,604억 4,561만원으로써 증액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공작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 기인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54억 608만 1,000원 대비 19.6%인 265억 3,852만 7,000원이 증가한 1,619억 4,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크

게 감소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전년도 수납율 99.8%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또한 전년 대비 53.7%가 감소되는 등 수납율은 높아졌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크게 감소하는 등 징수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하여 재정의 규모는 다소 커졌으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984억 8,923만 8,000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불용액 2,073억 705만 8,000원 대비 4.3%인 88억 1,782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또한 1,094억 9,2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인 396억 3,037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6억 7,58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신종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예방물품 긴급지원비 등 11회에 걸쳐 총 24억 2,6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4,90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와 6월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및 구상금 청구소송,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써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결산 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정수**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우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충북교육,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정수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6.2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신 교육감님의 취임을 앞두고 그 선거에서 비전을 겨루었던 당사자의 한 사람이자 충북교육의 더 나은 발전을 염원하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2 교육감 선거는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욕을 넘어 충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과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나름의 교육비전에 담아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운 구석이 적지 않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4년을 이끌고 가실 이기용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4년, 그간 못다 하신 열정을 더욱 쏟아내셔서 우리 충북교육을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서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교육주체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어서 역사에 남는 목민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선자께 주어진 충북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이자 최초의 3선 연임 교육감이라는 명예를 넘어서는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또한 도내 모든 교육주체들의 기대요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같이 하면서 가능한 최대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교육감께서도 당선 후 첫 일성으로 타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수용할 만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하고 계시기에 충북교육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진정을 담아 선거를 전후해서 느꼈던 소회와 당부를 허심탄회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학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공간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선거였습니다.

자기들의 삶인 당장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장차 자신들의 미래까지 그것에 달려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보물을 찾아 분석하기도 하고 후보들의 일거일동에 대한 세세한 평가뿐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들께 어느 후보를 뽑아달라고 조르기까지 하는 전에 없던 현상들마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추김이나 선동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마저 제기될 정도였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청소년 카페들마다 토론이 벌어지고 후보들의 홈페이지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놀려고만 하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들이었습니다.

효과도 없는 억지 공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시험부담을 제발 좀 덜어달라는 절박한 아우성들이었습니다.

철부지들이 뭘 알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온 어느 학생의 메일에는 학생들에게 교사평가도 하게 하고 담임선택제, 학교 선택제도 하겠다면서 교육감 선출권은 왜 안 주느냐는 항변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하지 못한 학부모들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요구가 일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비록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변화의 갈망을 확인했다고 자위하는 저에게 참 한가한 평가를 한다고 속상해 하면서 질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분은 소중한 내 아이의 4년을 잃었다면서 탄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표심은 아직은 소수였다고 돌려세우기에는 너무도 절박했던 기대로 여겨져서 뒤늦게야 그만큼 간곡하지 못했던 자신이 송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대들은 학교 일선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충북의 교사들이 교육현실을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이번 선거를, 당선자를 가리는 일을 넘어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선거 후에 저는 더더욱 확인하고 있습니다.

ALL or Nothing의 선거에서 낙선자에게 주어지는 입지는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자께서 보인 아량에도 불구하고 패자라 해서 고언조차 사리는 것은 더 비겁하고 소졸한 주저라는 고심 끝에 용기를 내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력신장,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학력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학력이 창의력, 상상력, 사고력, 탐구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일제고사나 연합고사 같은 시험이나 그것에 대비한 끝도 없는 문제풀이만으로 길러질는지, 그리고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신장될 것인지 이제야말로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책상 앞에 묶어놓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런 학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일률적

으로 강요되는 0교시나 자율학습, 억지 보충수업 등에 대해서는 진정 필요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형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발전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21세기의 아이들에게 낡은 방식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젊신을 신겨서 세계 무대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취임 후 곧장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민노당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의법 행정 조치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탈법 정치 행위입니다.

그 조치의 동기나 시기가 지극히 정치적임은 이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징계시효를 지난 사안까지 포함하거나 사법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행정벌을 앞세우는 점은 탈법적이기도 합니다.

징계양정까지 지침으로 내린 점은 월권일뿐 아니라 한나라당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조치에 비하면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징계가 뭐 그리 장하다고 앞장서서 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입장의 같고 다름을 떠나 인륜의 차원에서도 교권의 차원에서도 깊은 성찰과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극단의 조치를 서두를 경우 역사적 상흔을 남길 것이 자명한 만큼 사려 깊고 관대한 조치가 있기를 진지하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직선으로 동시에 치른 이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이후 교육자치 위기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말살을 겨냥하는 정치권의 노림수들은 선거과정과 결과를 넘어 앞으로 4년 동안 끊임없이 교육계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육감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수임한 신성한 교육자치 집행권을 더욱 의연하고도 당당히 행사하셔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의 자율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깨어있는 교육도시 충북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정수**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폐회)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10)
- 심사보고서(별첨 11)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10. 7.

의 장 곽 정 수

위 원 김 부 웅

위 원 김 병 우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10. 6. 28. ~ 6. 30.(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28일(월)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6. 28. ~ 6. 30. (3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 규칙안 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09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14:00 소위원회종료후	□ 소위원회 활동 o 조례심사소위원회 □ 현장방문 o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6월29일(화) 14:00	□ 소위원회 활동 o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휴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30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 규칙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09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산 회 □ 폐 회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발 의 자	정무 교육위원외 6명
발의연월일	2010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0. 6. .
발 의 자 : 곽정수, 김부웅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7인)

1. 제안이유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함.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폐지(부칙 제2조)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나.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부칙 제3조)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10)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1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⑤ 충청북도교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일부개정한다.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각각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각각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⑦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각각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각각 한다.

⑫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7조 중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9조의1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정무 교육위원외 6명
제출연월일	2010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0. 6. .
발 의 자 : 곽정수, 김무웅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7인)

1. 제안이유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함.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나.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규칙

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 규칙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①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규칙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211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41-3호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5. 20 . ~ 2010.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바꾸는 사항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정수수료
2. 시험수수료
3. 검정고시수수료
4. 제증명수수료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3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 .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정수수료 2. 시험수수료 3. 검정고시수수료 4. 제증명수수료 5. 정보공개수수료
②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따른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별표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신 설>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 월 일 (제 24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4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1)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나.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1)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제4호)

다.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삭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규) 발췌 : 붙임과 같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0. 6. 11. ~ 2010. 6. 17.

2) 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반영 여부 : 붙임과 같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관련여부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과학 및 정보화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3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원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
청원도서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
보은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4
옥천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9-1
영동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3
진천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9-2
괴산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12
증평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764
음성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금왕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3
단양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1

[별표 3]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34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72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36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5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1

[별표 5]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36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

[별표 6]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충주시 호암동 526-1
남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
1.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 신 설 >	9.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신 설 >	10. 과학 및 정보화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업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신 설 >	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30]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30, 일부개정]

제5조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09.1.30>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시·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시	충주시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청주시	청주시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청주시	청원군
	충청북도보은교육청	보은군	보은군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옥천군	옥천군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군	영동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진천군	진천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음성교육청	음성군	음성군
	충청북도단양교육청	단양군	단양군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예고 기간 : 2010. 6. 11 ~ 2010. 6. 17

□ 제 출 자 :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

○ 교육과학연구원장 분장 사무 조정 요구

제출분야	제출의견		반영여부
	개정안	변경요구	
연구원장에게 분장하는 사무조정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정 운영 및 관리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운영	반영

(별첨 6)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ㅋㅅ 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6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함

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을 추가함(안 제5조 제25호)

2)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2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규) 발췌 : 붙임과 같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0. 6. 11. ~ 2010. 6. 17.

2) 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반영 여부 : 붙임과 같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관련여부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각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삭제한다.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5호 개정규정 중 이 조례 시행전에 입찰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24. (생략)	1. ~ 24.(현행과 같음)
25.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 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6.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26. < 삭 제 >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규)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예고 기간 : 2010. 6. 11 ~ 2010. 6. 17

□ 제 출 자 : 시설과장

제출분야	제출의견		반영여부
	개정안	변경요구	
시설업무 이관범위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단, 학교신설, 전면개축, 전면리모델링, 주요 정책사업은 제외) 가.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나.학교 시설의 건축등과 관련된 사항 다.학교 시설 사업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라.청문 마.감독등과 관련된사항 바.준공검사등과 관련된 사항	(단, 학교신설 및 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반영
시설업무 이관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5호의 개정부분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미반영

□ 이관시기 미반영 사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 2010. 9. 1 시행

(별첨 7)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24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6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폐지

1)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초등학교 폐지 (휴 원 중)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학생수 감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관계기관(부서)협의 : 협의 완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10. 6. 4. ~ 6. 14. 의견 없음

3) 기타 : 2010. 학교 통·폐합 현황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4] 초등학교(제2조관련) 명 칭 /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별표 4] 초등학교(제2조관련) 명 칭 / 위 치 〈삭 제〉 / 〈삭 제〉
[별표 6] 유치원(제2조관련) 명 칭 / 위 치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별표 6] 유치원(제2조관련) 명 칭 / 위 치 〈삭 제〉 / 〈삭 제〉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 학교통·폐합 현황

□ 목 적

○ 이농현상 및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불가하여 통·폐합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경쟁력 강화

□ 현 황

○ 폐지학교 (학생수 기준 : 2010.4.1)

대 상 교	위 치	학생수	폐지년월일	비고
남일초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	2010. 9. 1	휴원중
남일초두산분교장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5	2010. 9. 1	

○ 통합교

학교명	구 분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특수학급		계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남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전					20	2			20	2
	통합후					20	2			20	2

학교명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특수학급		계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남일초등학교	통합전	46	2	45	2	52	2	72	3	76	3	53	2	4	1	344	15
	통합후	46	2	45	2	54	2	72	3	76	3	56	2	4	1	349	15

□ 기 타

○ 폐지학교 학생 통학편의 지원계획

- 차 량 : 콜벤 이용
- 소요액 : 1,400천원[1일 14,000원×100일(2학기 수업일수)=]
- 교육장재량사업비(청원교육청) 지원계획
- 2011년이후 임차차량, 택시비, 통학비의 직접지급 등 다양한 방법 검토

(별첨 8)

의안번호	제 7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241 회)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44 -7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기관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건 물	새터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	1,700	3,445,630
	경덕중학교	다목적실 증축(변경)	1,494	1,863,000
합 계		2건	3,194	5,308,630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임 : 배치도면 2매.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2010년도 당초계획			2010년도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취득합계		18	225,707.5	95,056,894	2	3,194	5,308,630	20	228,901.5	100,365,524
	계	토지	8	194,136.0	34,638,866				8	194,136.0	34,638,866
		건물	10	31,571.5	60,418,028	2	3,194	5,308,630	12	34,765.5	65,726,658
		기타									
	1. 매입	토지	7	166,810.0	30,830,593				7	166,810.0	30,830,593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1	27,326	3,808,273				1	27,326	3,808,273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0	31,571.5	60,418,028	2	3,194	5,308,630	12	34,765.5	65,726,658
		기타									
처분	처분합계		3	34,591.36	4,025,353				3	34,591.36	4,025,353
	계	토지	2	33,758.00	3,896,428				2	33,758.00	3,896,428
		건물	1	833.36	128,925				1	833.36	128,925
		기타									
	4. 매각	토지	1	7,099.00	87,893				1	7,099.00	87,893
		건물	1	833.36	128,925				1	833.36	128,925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1	26,659.00	3,808,535				1	26,659.00	3,808,535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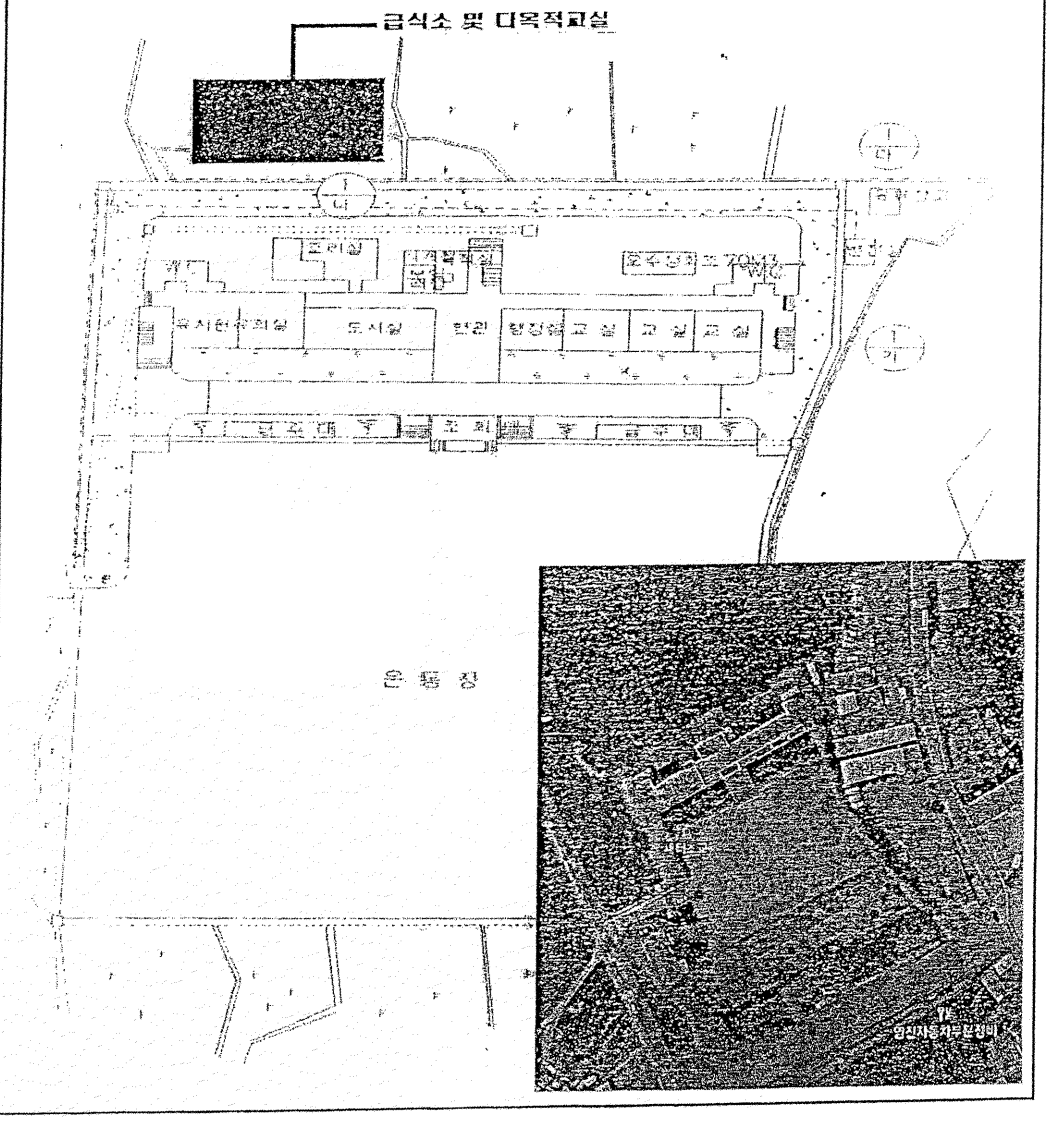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재산의 표시				추정금액	취득 시기	취득(교환) 사유	취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새터 초등학교	건물	청주시 사천동 200	1,700	3,445,630	하반기	- 급식환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	교육감	도면 1
경덕 중학교	〃	청주시 가경동 1500	1,494	1,863,000	하반기	- 급식소에 다목적실 추가 증축 1 수량 • 당초 : 1,062㎡ • 변경 : 2,556㎡ 증감 : 1,494㎡ 2 물량 • 당초 : 2,182,760천원 • 변경 : 4,045,760천원 증감 : 1,863,000천원	교육감	도면 2 (30%이상 변동)
합 계			3,194	5,308,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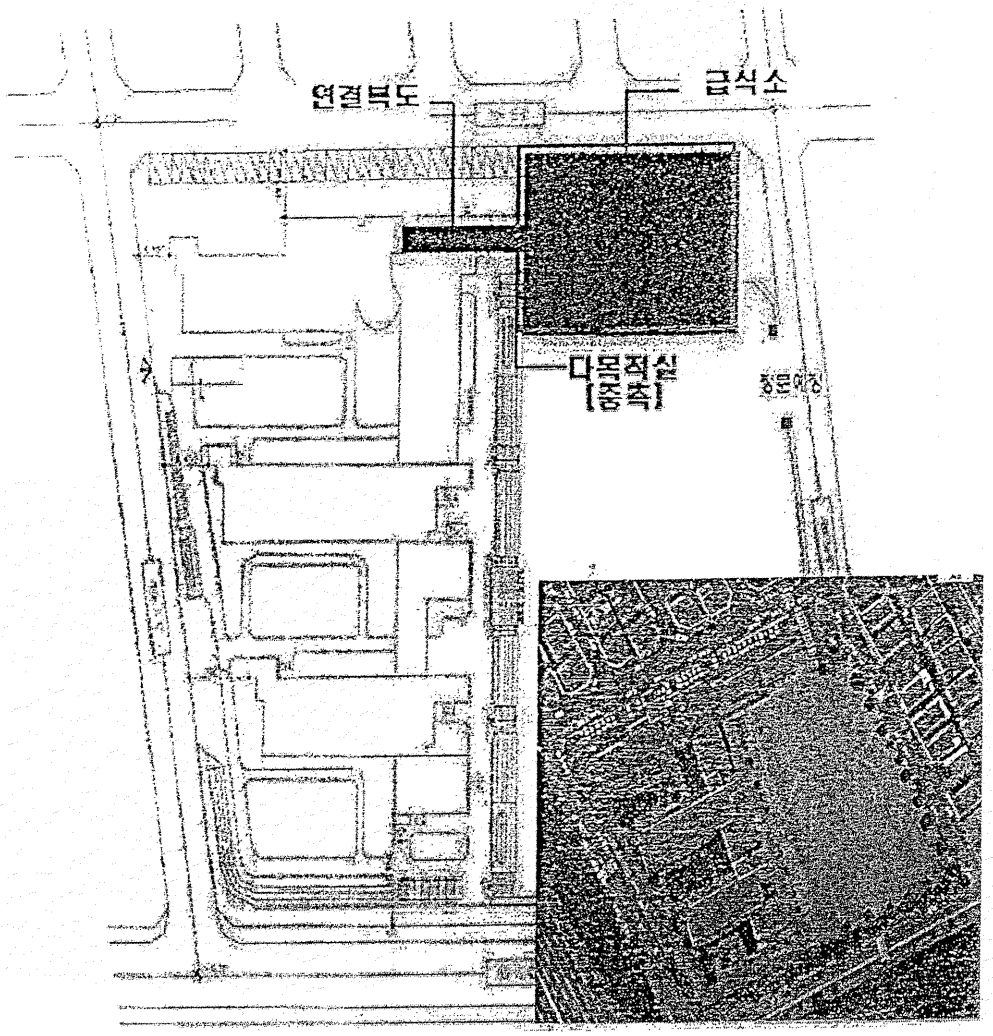
「도면 1」 : 세터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상당구 사천동	200	철 · 콘	1,700	3,445,630	급식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도면 2」 : 경덕중학교 건물 취득(변경) 배치도

구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당초	급식소 증축	흥덕구 가경동	1500	철 · 콘	1,062	2,182,760	다목적실 증축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변경	급식소 및 다목적실증축				2,556	4,045,760	
증감					1,494	1,863,000	



(별침 9)

의안번호	제 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24 회)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6월 18일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41-4

제출연월일 : 2010.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936,054,829,150원
- 세출결산액 : 1,628,160,112,670원
- 세계잉여금 : 307,894,716,480원으로,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09,492,527,00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6,577,550원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198,395,611,930원임.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 별책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책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별책

☐ 참고사항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 : 별책

2.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이유

○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 출 건 수 : 11 건

○ 지 출 결 정 액 : 2,675,869,000원

○ 지 출 액 : 2,426,812,770원

○ 다음년도이월액 : 90,569,000원

○ 잔 액 : 158,487,230원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 출 건 명	지 출 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잔 액	비 고
구상금 지급	2009.02.23.	8,521,000	8,520,410	0	590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비급
호우피해 복구비	2009.07.29.	7,500,000	6,466,890	0	1,033,110	청성초 피해시설 복구
호우피해 복구비	2009.07.29.	239,030,000	125,243,380	0	113,786,620	봉양초 및 백운초 피해시설 복구
호우피해 복구비	2009.07.29.	432,380,000	298,753,090	90,569,000	43,057,910	음성고 및 제천 디지털고 피해시설 복구
호우피해 복구비	2009.07.29.	5,209,000	4,600,000	0	609,000	영동학생야영장 피해시설 복구
신종플루확산 방지 물품 구입	2009.09.08.	438,155,000	438,155,000	0	0	체온계 등 구입 지원(공립)
		77,533,000	77,533,000	0	0	체온계 등 구입 지원(사립)
신종플루 예방 물품 구입	2009.09.11.	312,500,000	312,500,000	0	0	손소독기 구입 지원(공립)
		79,000,000	79,000,000	0	0	손소독기 구입 지원(사립)
지방선거 관리경비 지급	2009.09.30.	239,678,000	239,678,000	0	0	지방선거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 지급
신종플루 확산 방지 경비 지급	2009.12.14.	104,845,000	104,845,000	0	0	보건인턴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인건비 지급(공립)
		7,518,000	7,518,000	0	0	보건인턴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인건비 지급(사립)
신종플루 확산 방지	2009.12.15.	494,000,000	494,000,000	0	0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분담금
배상액 지급	2009.12.16.	230,000,000	230,000,000	0	0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액 지급
계		2,675,869,000	2,426,812,770	90,569,000	158,487,230	

□ 예비비 사용명세서 : 붙임

[붙 임]

2009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

(단위 : 원)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교육행정 일반	법무관리	소송 및 행정심판	배상금 [310]	8,521,000	8,520,410	0	590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건설비 (420-03)	7,500,000	6,466,890	0	1,033,110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건설비 (420-03)	239,030,000	125,243,380	0	113,786,620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건설비 (420)	432,380,000	298,753,090	90,569,000	43,057,910
기관운영 관리	교육행정 기관시설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시설	건설비 (420-03)	5,209,000	4,600,000	0	609,00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620-03)	438,155,000	438,155,000	0	0
			사학지원비 (630-03)	77,533,000	77,533,000	0	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회계전 출금 (620-03)	312,500,000	312,500,000	0	0
			사학지원비 (630-03)	79,000,000	79,000,000	0	0
교육행정	선거관리	교육감	일반회계	239,678,000	239,678,000	0	0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일반		선거관리	전출금 (610-01)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보건 사업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620-03)	104,845,000	104,845,000	0	0
			사학지원비 (630-03)	7,518,000	7,518,000	0	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보건 사업관리	운영비 (210-01)	494,000,000	494,000,000	0	0
교육행정 일반	법무관리	소송 및 행정심판	배상금 [310]	230,000,000	230,000,000	0	0
합계				2,675,869,000	2,426,812,770	90,569,000	158,487,230

(별첨 10)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30.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 규칙안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21일, 교육위원 정무 외 6명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교육위원 정무)

가. 제안이유

○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부칙 제3조)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다른 조례 폐지(부칙 제2조) 및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부칙 제3조)을 부칙으로 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례를 일괄 정리한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 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21일, 교육위원 정무 외 6명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교육위원 정무)

가. 제안이유

○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규칙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규칙안은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규칙안을 대표 발의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 신분증규칙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부칙 제2조)을 부칙으로 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규칙을 일괄 정리한 것으로 본 폐지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제15조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 제1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제3호)

○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삭제

-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제1호를 보완하고, 제8호 부터 제10호 까지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25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하였고,

○ 별표 2 부터 별표 6에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을 삭제하는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함

-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을 추가함(안 제5조 제25호)
-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26호)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5호에서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 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같은조 제26호를 삭제 교육장의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본청 · 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6월 2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폐지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초등학교 폐지 (휴 원 중)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학생수 감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소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남일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이 없어 휴원 중이며, 두산분교 재학생은 3명(2010.6.20.현재) 으로 통학구역 내 취학대상 아동수가 적어 더 이상 학생 증가요인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6. 3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서 수 웅

간 사 김 병 우

위 원 김 부 웅

성 영 용

이 상 일

정 무

(별첨11)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6. 30. 11:00)

심 사 보 고 서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6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10년 6월 29일)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 희 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1,936,054,829,150원,
- 세출결산액 : 1,628,160,112,670원,
- 세계잉여금 : 307,894,716,480원으로,

○ 세계잉여금 중

- 다음연도 이월액 109,492,527,000원,
- 국고보조금 잔액 6,577,550원,
- 순세계 잉여금은 198,395,611,930원임.

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고

□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2009년	1,787,018,972	1,936,141,878	1,936,054,829	1,628,160,113
2008년	1,723,022,157	1,784,547,427	1,781,758,836	1,428,117,463
증감(%)	63,996,815 (3.7%)	151,594,451 (8.5%)	154,295,993 (8.7%)	200,042,650 (14.0%)

연도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상 환
2009년	307,894,716	104,006,241	5,486,286	6,578	198,395,611	0
2008년	353,641,373	134,636,590	14,483,316	0	204,518,467	0
증감(%)	△45,746,657 (△12.9%)	△30,633,349 (△22.8%)	△8,997,030 (△62.1%)	6,578 (100.0%)	△6,122,856 (△3.0%)	0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8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8.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 9,360억 5,482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

비 84.1%에 해당되는 1조 6,281억 6,011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3,078억 9,471만 6천원이 발생하였음.

○ 세계잉여금 3,078억 9,471만 6천원 중 1,040억 624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고, 54억 8,628만 6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57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983억 9,561만 1천원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음

○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산현액은 8.5%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8.7%, 세출결산액은 14.0%가 각각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은 12.9%가 감소되었음

나. 세입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D-E-F)	1)수납율 (%)	
								E/C	E/D
2009년	1,787,018,972	149,122,906	1,936,141,878	1,936,255,586	1,936,054,829	4,264	196,493	99.9	99.9
2008년	1,723,022,157	61,525,270	1,784,547,427	1,782,189,824	1,781,758,836	7,024	423,964	99.8	99.9
증감 (%)	63,996,815 (3.7%)	116,853,228 (189.9%)	151,594,451 (8.5%)	154,065,763 (8.6%)	154,295,993 (8.7%)	△2,759 (△39.3%)	△227,471 (53.7%)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9,360억 5,482만 9천원으로

· 세입 징수결정액 1조 9,362억 5,558만 6천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9,361억 4,187만 8천원 대비 99.9%를 수납하여 전년도 수납율 99.8%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 징수결정액 중 426만 4천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0%인 1억 9,649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세입 관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관 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수납율(%) ③/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70,453,569	1,270,453,569	1,270,453,569	0	0	100.0
2. 국고보조금	30,170,716	30,170,716	30,170,716	0	0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소계	1,300,624,285	1,300,624,285	1,300,624,285	0	0	100.0
3. 법정이전수입	129,736,090	129,535,846	129,535,846	0	0	100.0
4. 비법정이전수입	10,407,924	10,402,018	10,402,018	0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소계	140,144,014	139,937,864	139,937,864	0	0	100.0
5. 민간이전수입	1,206,938	1,217,939	1,217,939	0	0	100.0
기타이전수입 소계	1,206,938	1,217,939	1,217,939	0	0	100.0
6. 기본적교육수입	33,913,627	33,911,661	33,905,166	4,265	2,230	99.9
7. 선택적교육수입	294,250	279,504	279,504	0	0	95.0
교수-학습활동수입 소계	34,207,877	34,191,164	34,184,669	4,265	2,230	99.9
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84,110	1,584,720	1,584,720	0	0	100.0
행정활동수입 소계	1,584,110	1,584,720	1,584,720	0	0	100.0
9. 자산임대수입	1,044,990	1,063,479	977,283	0	86,196	93.5
10. 자산매각대	3,622,114	3,685,353	3,685,353	0	0	101.7
자산수입 소계	4,667,104	4,748,832	4,662,636	0	86,196	99.9
11. 이자수입	11,146,204	11,284,958	11,284,958	0	0	101.2
이자수입 소계	11,146,204	11,284,958	11,284,958	0	0	101.2
12. 보증금회수	0	0	0	0	0	100.0
금융자산회수 소계	0	0	0	0	0	100.0
13. 제재금수입	199,996	200,220	195,739	0	4,481	97.9
14. 잡수입	990,197	1,094,450	1,094,450	0	0	110.5
15. 과년도수입	418,440	418,441	314,855	0	103,586	75.2
잡수입 소계	1,608,633	1,713,111	1,605,045	0	108,067	99.8
16. 지방교육채	87,311,340	87,311,340	87,311,340	0	0	100.0
지방교육채및학교채소계	87,311,340	87,311,340	87,311,340	0	0	100.0
17. 순세계잉여금	204,498,040	204,498,040	204,498,040	0	0	100.0
18. 보조금사용잔액	20,427	20,427	20,427	0	0	100.0
19. 이월금	149,122,906	149,122,906	149,122,906	0	0	100.0
전년도이월금 소계	353,641,373	353,641,373	353,641,373	0	0	100.0
합 계	1,936,141,878	1,936,255,587	1,936,054,829	4,265	196,493	99.9

- 세입 관별 결산액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2,704억 5,356만 9천원, 국고보조금 3,017만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3,006억 2,428만 5천원,

· 법정이전수입 1,295억 3,584만 6천원, 비법정이전수입 104억 201만 8천원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399억 3,786만 4천원,

· 민간이전수입인 기타이전수입이 12억 1,793만 9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인 기본적교육수입 339억 516만원 6천원, 학생급식비 부담금 및 수강료수입인 선택적교육수입 2억 7,950만 4천원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이 341억 8,466만 9천원,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인 행정활동수입이 15억 8,472만원,

· 자산임대수입 9억 7,728만 3천원, 자산매각대 36억 8,535만 3천원 등 자산수입이 46억 6,263만 6천원,

· 이자수입이 112억 8,495만 8천원,

· 재재금수입 1억 9,573만 9천원, 잡수입 10억 9,445만원, 과년도수입 3억 1,485만 5천원 등 잡수입이 16억 504만원 5천원,

·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873억 1,134만원,

· 순세계잉여금 2,044억 9,804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42만 7천원, 이월금 1,491억 2,290만 6천원 등 전년도이월금이 3,536억 4,137만 3천원임

○ 세입재원별 결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수납율(%) ③/①	비고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1,300,624,285	1,300,624,285	1,300,624,285	0	0	100.0	67.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0,144,014	139,937,864	139,937,864	0	0	99.9	7.2%
	기타이전수입	1,206,938	1,217,939	1,217,939	0	0	100.1	0.1%
소 계		1,441,975,237	1,441,780,088	1,441,780,088	0	0	100.0	74.5%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4,207,877	34,191,164	34,184,669	4,265	2,230	99.9	1.7%
	행정활동수입	1,584,110	1,584,720	1,584,720	0	0	100.0	0.1%
	자산수입	4,667,104	4,748,832	4,662,636	0	86,196	99.9	0.2%
	이자수입	11,146,204	11,284,958	11,284,958	0	0	101.2	0.6%
	금융자산회수	0	0	0	0	0	100.0	0.0%
	잡수입	1,608,633	1,713,111	1,605,045	0	108,067	99.8	0.1%
소 계		53,213,928	53,522,786	53,322,028	4,265	196,493	100.2	2.7%
차입	지방교육채및학교채	87,311,340	87,311,340	87,311,340	0	0	100.0	4.5%
소 계		87,311,340	87,311,340	87,311,340	0	0	100.0	4.5%
기타	전년도이월금	353,641,373	353,641,373	353,641,373	0	0	100.0	18.3%
소 계		353,641,373	353,641,373	353,641,373	0	0	100.0	18.3%
합 계		1,936,141,878	1,936,255,587	1,936,054,829	4,265	196,493	99.9	100.0%

- 세입결산액 1조 9,361억 4,187만 8천원의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이전수입이 전년도 88.5%보다 14.0%가 감소한 74.5%, 자체수입 및 이월금이 전년도 11.5%보다 14.0% 증가한 25.5%를 차지함

· 이전수입 중 전체 세입결산액의 67.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006억 2,428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 전체 세입결산액의 7.2%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399억 3,78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1,401억 4,401만 4천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 자체수입 및 이월금은 4,942억 7,474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 4,941억6,664만 1천원 대비 100.0%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 결산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음.

○ 불납결손 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비 고
관	항	목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13	자퇴 등 제적학생 수업료
		수업료	3,979	
		지난년도수업료	273	
합 계			4,265	

- 2009년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702만 3천원 대비 39.3%인 275만 8천원이 감소된 426만 5천원으로 2009년도 자퇴 등 제적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결손액 399만 2천원과 2008년도에 미수납되어 2009년도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된 수업료 중 시효(1년)가 완성된 수업료 결손액 27만 3천원을 불납결손 처리한 바, 수업료 채권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임을 감안하여 수업료의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미수납액	비 고
관	항	목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수업료	2,230	채무자 재력 부족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86,196	채무자 재력 부족
잡 수 입	제세금수입	연체료	4,481	채무자 재력 부족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103,586	채무자 재력 부족
합 계			196,493	

- 2009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4억 2,396만 4천원 대비 53.7%인 2억 2,747만 1천원이 감소된 1억 9,649만 3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업료 223만원, 제천 봉양초 봉남분교외 5개소 폐교임대료 8,619만 6천원, 단양 영춘초 동대분교외 1개소 연체료 448만 1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환수금외 4건 1억 358만 6천원이 미수납됨

· 미수납액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 재력부족 사유로 발생한 바, 임대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임대료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망됨.

다. 세출결산

○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다음연도이월액(E)			불용액 (F=C-D-E)	
					명시	사고	계	불용액	F/C
2009년	1,787,018,972	149,122,906	1,936,141,878	1,628,160,113	104,006,241	5,486,286	109,492,527	198,489,238	10.3
2008년	1,723,022,157	61,525,270	1,784,547,427	1,428,117,463	134,639,590	14,483,316	149,122,906	207,307,058	11.6
증감 (%)	63,996,815 (3.7%)	87,597,636 (142.4%)	151,594,451 (8.4%)	200,042,650 (14.0%)	△30,633,349 (△22.8%)	△8,997,030 (△62.1%)	△39,630,379 (△26.6%)	△8,817,820 (△4.3%)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7,870억 1,897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491억 2,290만 6천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조 9,361억 4,18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4%가 증가하였으며,
-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14.0%가 증가한 1조 6,281억 6,011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1%를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094억 9,252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40억 624만 1천원, 사고이월액이 54억 8,628만 6천원이며,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984억 8,923만 8천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불용액 2,073억 705만 8천원보다 4.3%가 감소하였음.

○ 세출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1. 인적자원운용	959,392,794	879,424,799 (91.7%)	0 (0.0%)	79,967,995	8.3
2. 교수-학습활동지원	180,579,671	155,105,085 (85.9%)	18,996,482 (10.5%)	6,478,104	3.6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율(%) ④/①
3. 교육격차해소	92,604,057	80,646,966 (87.1%)	5,954,153 (6.4%)	6,002,938	6.5
4. 보건/급식/체육활동	30,802,577	25,152,647 (81.7%)	4,179,525 (13.6%)	1,470,405	4.8
5. 학교재정지원관리	232,476,703	226,302,237 (97.3%)	0	6,174,466	2.7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4,893,826	176,148,883 (64.1%)	76,147,696 (27.7%)	22,597,247	8.2
7. 평생교육	3,221,206	2,884,130 (89.5%)	139,912 (4.3%)	197,164	6.1
8. 직업교육	1,096,154	980,043 (89.4%)	44,000 (4.0%)	72,111	6.6
9. 교육행정일반	34,123,864	30,131,007 (88.3%)	1,464,804 (4.3%)	2,528,053	7.4
10. 기관운영관리	38,214,686	33,911,983 (88.7%)	2,565,955 (6.7%)	1,736,748	4.5
1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7,517,941	17,451,906 (99.6%)	0	66,035	0.4
12. 예비비및기타	71,218,399	20,426 (0.0%)	0	71,197,973	100.0
합 계	1,936,141,878	1,628,160,112 (84.1%)	109,492,527 (5.7%)	198,489,239	10.2

-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 9,593억 9,279만 4천원 대비 91.7%인 8,794억 2,479만 9천원을 지출하고, 8.3%인 799억 6,799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함.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805억 7,967만 1천원 대비 85.9%인 155억 50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0.5%인 189억 9,648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6%인 64억 7,810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함.

· 교육격차해소는 예산현액 926억 405만 7천원 대비 87.1%인 806억 4,696만 6천원을 지출하고, 6.4%인 59억 5,415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5%인 60억 293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함.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 308억 257만 7천원 대비 81.7%인 251억 5,26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3.6%인 41억 7,952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8%인 14억 7,040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함.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 2,324억 7,670만 3천원 대비 97.3%인 2,263억 223만 7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7%인 61억 7,446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 2,748억 9,382만 6천원 대비 64.1%인 1,761억 4,888만 3천원을 지출하고, 27.7%인 761억 4,769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2%인 225억 9,724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함.
-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32억 2,120만 6천원 대비 89.5%인 28억 8,413만원을 지출하고, 4.3%인 1억 3,99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1%인 1억 9,716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함.

· 직업교육은 예산현액 10억 9,615만 4천원 대비 89.4%인 9억 8,004만 3천원을 지출하고, 4.0%인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인 7,211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함.

·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341억 2,386만 4천원 대비 88.3%인 301억 3,100만 7천원을 지출하고, 4.3%인 14억 6,480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4%인 25억 2,805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함.

·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382억 1,468만 6천원 대비 88.7%인 339억 1,198만 3천원을 지출하고, 6.7.%인 25억 6,595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인 17억 3,674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함.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175억 1,794만 1천원 대비 99.6%인 174억 5,1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0.4%인 6,603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함.

·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712억 1,839만 9천원 대비 0.0%인 2,042만 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0.0%인 711억 9,797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명시이월	101	175,820,223	64,873,740	110,946,483	104,006,241	6,940,242	
사고이월	10	64,472,062	50,101,606	14,370,456	5,486,286	8,884,170	
합 계	111	240,292,285	114,975,346	125,316,939	109,492,527	15,824,412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4억 9,252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113건 1,475억 124만 6천원 대비 29.5%인 434억 9,500만 5천원이 감소된 1,040억 624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14건 144억 8,331만 6천원 대비 62.1%인 89억 9,703만원이 감소된 54억 8,628만 6천원임

- 명시이월액 내역은

· 학교정책과가 초등학교 사회교과 보충교재 개발 외 80건에 38억 508만 8천원,

· 초등교육과가 지역별 연수프로그램운영 외 6건에 4억 3,626만 6천원,

· 중등교육과가 진로교육 특별연수 외 3건에 58억 8,374만 7천원,

· 산업정보평생과가 충주여상 실습실 신축 외 2건에 3억 8,019만 8천원,

· 체육보건급식과가 충주예성여고 운동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외 12건에 56억 9,883만원,

· 총무과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건에 12억 2,374만 4천원,

· 행정예산과가 기숙형공립고시설확충 외 1건에 155억 9,2988 8천원,

· 시설과가 흥덕고 기숙사 증축 외 19건에 314억 2,432만 1천원,

· 청주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8건에 114억 4,345만원,

· 충주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2건에 4억 387만 8천원,

· 제천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10건에 20억 4,775만 9천원,

· 청원교육청이 양청중학교 신설 외 3건에 121억 8,606만 8천원,

· 보은교육청이 기숙형중학교 설립 외 1건에 7억 6,380만원,

· 옥천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5건에 34억 3,959만 5천원,

· 영동교육청이 부용초 다목적교실 확충 외 5건에 19억 4,123만 6천원,

· 진천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3건에 6억 730만 9천원,

· 괴산증평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5건에 25억 5,196만 4천원,

· 음성교육청이 Wee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외 3건에 4억 5,333만 5천원,

· 단양교육청이 단양중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외 3건에 37억 2,266만 5천원원임

- 사고이월액 내역은

· 학교정책과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내수중 교실증축) 1억 1,516만 5천원,

· 체육보건급식과가 외천초 야구장조성비 4억 9,049만 1천원,

· 행정예산과가 충주여고, 제천여고 기숙사증축비 29억 4,163만 4천원,

· 시설과가 충북공고 장애인편의시설증축 및 기타공사비 2억 2,884만 3천원, 음성고 비달면 수해복구비 9,056만 9천원,

· 청주교육청이 교동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 4억 2,850만원,

· 제천교육청이 의림여중 하키장 조성비 2억 2,636만 3천원, 신백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9억 2,195만 7천원,

· 청원교육청이 외천초 외부환경개선비 4,276만 4천원으로

- 특히, 내수중 교실증축외 4건의 사업계약에 있어 사업비의 규모와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때 3~4개월의 공사기간중 동절기가 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기간을 책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P29) 참고】

○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산현액 (A)	불용액(B)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B/A)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 급 사 유 미발생	집행잔액	
1. 인건비	814,801,546	73,055,715	3,509	2,761,178	97,365	70,193,663	9.0
2. 물건비	81,503,561	5,186,596	106,572	1,639,845	89,265	3,350,914	6.4
3. 이전지출	122,827,484	6,336,335	104,723	69,800	161,117	6,000,695	5.1
4. 자산취득	388,240,210	32,008,123	61,970	235,617	237,137	31,473,400	8.2
5. 상환지출	14,410,623	30,112	0	0	0	30,112	0.2
6. 전출금등	443,140,055	10,674,384	125,068	26,711	199,378	10,323,226	2.4
7. 예비비및기타	71,218,399	71,197,973	0	0	0	71,197,973	99.97
합 계	1,936,141,878	198,489,238	401,842	4,733,151	784,262	192,569,983	10.3

- 불용액 발생 총 규모는 1,984억 8,923만 8천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2,073억 705만 8천원 대비 4.3인 88억 1,782만원이 감소됨

- 불용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가 4억 184만 2천원(0.2%),

· 예산절감이 47억 3,315만 1천원(2.4%),

· 지급사유 미발생이 7억 8,426만 2천원(0.4%),

· 집행잔액이 1,925억 6,998만 3천원 (97.0%), 임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단위 : 천원)

건수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20	1,033,914	1,033,914	○ 예산편성시 과목적용 착오로 인한 목간 예산전용 : 163,200천원 ○ 수요조사 결과 예산편성 대비 변경으로 인한 전용 96,500천원 ○ 충북소년체전 공개행사 출연교 변경으로 인한 전용 : 3,000천원 ○ Edu Core스쿨 대상교 추가 선정으로 인한 전용 : 100,000천원 ○ 교과교실제 공모결과 지원교 변경으로 인한 전용 : 606,000천원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65,214천원

·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나,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시 과목적용 착오로 인한 목간 예산전용 7건, 1억 6,320만원, 수요조사 결과 예산편성 대비 변경으로 인한 전용 9,650만원, 충북소년체전 공개행사 출연교 변경으로 인한 전용 300만원, Edu Core스쿨 대상교 추가 선정으로 인한 전용 1억원, 교과교실제 공모결과 지원교 변경으로 인한 전용 6억 600만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5,521만 4천원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업은 가급적 당해연도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원가통계목의 잘못 설정으로 이를 정정하고자 7건의 과목의 전용을 실시하였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아 학교회계전출금과 사학지원비 간 예산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건설비는 수요예측 잘못으로 전용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인 법정경비임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실시하는 등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 채무부담행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채무부담 승인액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승인일자
09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감액 보전	87,311,340	87,311,34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009.07.23

○ 계속비 지출 : 해당없음

○ 채권 및 채무관리 현황

-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발생액)	감(소멸액)		
수업료	1,933	297	2,230	1,933	2,230	
대여장학금	46,948,818	1,555,720	7,755,042	6,199,322	48,504,539	
재산수입 (임대료 등)	27,033	72,232	90,677	18,445	99,264	
소송비용액	1,879	0	0	0	1,879	
전세권	342,000	70,000	332,000	262,000	412,000	
기초/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00,000	△300,000	0	300,000	0	
기타채권	93,119		19,878	19,878	93,119	
합 계	47,714,782	1,398,249	8,199,827	6,801,578	49,113,031	

· 채권은 대부분이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9년도에 77억 5,504만 2천원이 발생하고, 61억 9,932만 2천원이 소멸되어 15억 5,572만원이 증가되고, 기초/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00,000천원이 소멸되는 등 전년도말 현재액 477억 1,478만 2천원 대비 2.9%인 13억 9,824만 9천원이 증가된 499억 1,103만 1천원임.

·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채권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의 최소화 등 채권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채무현재액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 입 금	0	0	87,311,340	0	87,311,340	
계	0	0	87,311,340	0	87,311,340	

· 채무현재액은 2009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써 추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 공유재산현황

(단위 : 천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행정재산	3,165,981,173	254,061,236	268,584,294	14,523,058	3,420,042,409	98.8%
일반재산	36,918,598	3,484,603	9,679,778	6,195,175	40,403,201	1.2%
합 계	3,202,899,771	257,545,839	278,264,072	20,718,233	3,460,445,610	100%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조 2,028억 9,977만 1천원 대비 8.0%인 2,575억 4,583만 9천원이 증가한 3조 4,604억 4,561만원으로 증액의 대부분이 학교신설

에 따른 토지 및 건물·공작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서 기인된 것으로,

·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3조 4,200억 4,240만 9천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일반재산이 404억 320만 1천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 물품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	감		
135,406,081	26,538,527	35,486,616	8,948,089	161,944,608	

· 물품관리는 전년도말 현재액 1,354억 608만 1천원 대비 19.6%인 265억 3,852만 7천원이 증가한 1,619억 4,460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운반·건설기계·차량, 산업기계, 기타잡기기의 신규구입 및 처분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종합의견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은 09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대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사료됨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9,360억 5,482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9,362억 5,558만 6천원 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9,361억 4,187만 8천원 대비 99.9%를 수납하여 전년도 수납율 99.8% 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9.3%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 대비 53.7%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인 세입에 있어 징수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세입결산액 재원구성별 내역을 보면 이전수입이 전년도 88.5%보다 14.0%가

감소한 74.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 및 이월금이 전년도 11.5%보다 14.0% 증가한 25.5%를 차지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자체수입 및 이월금이 증가하였으나, 09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 부담액이 증가 하였는 바, 교부금 및 자체 세입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7,870억 1,897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491억 2,290만 6천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조 9,361억 4,187만 8천원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산현액은 8.4% 증가하는 등 재정규모가 다소 커졌으나, 이월사업비(△26.6%), 순세계잉여금(△4.3%) 등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 졌으며,

○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984억 8,923만 8천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불용액 2,073억 705만 8천원 대비 4.3%인 88억 1,782만원이 감소한 바,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4억 9,252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113건 1,475억 124만 6천원 대비 29.5%인 434억 9,500만 5천원이 감소된 1,040억 624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14건 144억 8,331만 6천원 대비 62.1%인 89억 9,703만원이 감소된 54억 8,628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이월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예산의 적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 희 지)

가. 제안이유

○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출건수 : 11건
○ 지출결정액 : 2,675,869,000원
○ 지 출 액 : 2,426,812,770원
○ 다음년도이월액 : 0원
○ 잔 액 : 249,056,230원

□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2009.2.23	8,521,000	8,520,410	590	청주지방법원 2008가소 7548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2009.7.29	684,119,000	435,063,360	249,055,640	청성초,봉양초,백운초,음성고,제천디지탈고,영동학생야영장,

지출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예방물품 긴급지원비	2009.9.8	515,688,000	515,688,000	0	
	2009.9.11	391,500,000	391,500,000	0	
지방선거 관리경비	2009.9.30	239,678,000	239,678,000	0	교육감선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인턴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제운영	2009.12.14	112,363,000	112,363,000	0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지방비 분담금	2009.12.15	494,000,000	494,000,000	0	
민사소송 판결 배상액	2009.12.16	230,000,000	230,000,000	0	
합 계		2,675,869,000	2,426,812,770	249,056,230	

나. 예비비사용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소관	세부사업	목			
행정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보전금	8,521,000	8,520,410	590
옥천교육청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건설비	7,500,000	6,466,890	1,033,110
제천교육청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건설비	239,030,000	125,243,380	113,786,620
시설과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건설비	432,380,000	298,753,090	133,626,910
영동교육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시설	건설비	5,209,000	4,600,000	609,000
체육보건급식과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회계전출금	750,655,000	750,655,000	0
		사학지원비	156,533,000	156,533,000	0
총무과	교육감선거관리	전출금등	239,678,000	239,678,000	0
체육보건급식과	학교보건운영관리	학교회계전출금	104,845,000	104,845,000	0
		사학지원비	7,518,000	7,518,000	0
		운영비	494,000,000	494,000,000	0
행정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보전금	230,000,000	230,000,000	0
합 계			2,675,869,000	2,426,812,770	249,056,230

○ 예비비 26억 7,586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852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4억 3,506만 3천원, 신종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따른 경비 15억 1,355만 1천원, 지방선거 관리비 2억 3,967만 8천원, 민사소송 판결 배상액 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05만 6천원이 불용되었음

□ 종합의견

○ 금번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청성초, 봉양초, 백운초, 음성고, 제천디지털고, 영동학생야영장 등에 시설피해를 긴급 복구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 2009년도에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물품 구입, 보건인턴교사 및 멘토링제 운영, 항바이러스제 구입 교육청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지출 되었으며,
- 2009년 6월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부담 선거관리경비를 위하여 지출되었고,
- 구상금 청구소송 및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구상금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써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6. 30.

예산·결산소위원회

위 원 장 김 부 웅

간 사 성 영 용

위 원 김 병 우

서 수 웅

이 상 일

정 무

第2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57

Ⅱ.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75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14시 08분

議事日程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6.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6.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수웅 교육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서수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심의되는 조례가 원만하게 과정서부터 결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간사선출의건

(14시 10분)

● 위원장 서수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 **정무 위원**

교육위원 정무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김병우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이번 소위에 여러 개의 조례 폐지안 또는 개정안이 부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와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수고하셨습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12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

(14시 14분)

● 위원장 서수웅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교육위원 7명 전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써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인력보강이나 대책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교평가하고 정보화 및 과학관련 연수하고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그리고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네 가지는 거의 다 정보화 및 과학관련 연수업무하고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업무는 최소한의 기획업무를 제외하고 이미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1인이 학교평가 업무하고 요 4가지를 했을 때에 본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에 2분의 1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214명의 전문직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동시켜서 거기에 보강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요런 업무가 이미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만 여기 본청에서 하고 있었고 이것이 과학연구원으로 간다하더라도 1명 내지 2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한 2분의 1정도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과부의 정원배정에서 증원을 시켜준다면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소관 되어 있는 영어영재 교육업무를 외국어교육원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제가 먼저 번 회의 때도 질문한 것이 있는데 남부영어센터 외국어센터가 또 북부영어센터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어교육원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번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업무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제 영어업무도 외국어업무니까 거기에 하면 어떠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라든가 아니면 일선과의 관계를 따지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외국어교육원 청주분원이 지금 생겼잖아요. 거기랑 발 맞추어서 남부·북부영어센터라도 외국어교육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이나 모든 기능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체계적이고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외국어연수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최일선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한 군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두고 연구를 하시죠.

● **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감사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각 지역교육청마다 감사담당이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감사담당 전문공무원은 청주, 충주, 제천만 있고 그 외의 교육청에서는 다른 업무하고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감사담당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 어쨌든 업무가 줄므로 해서 지역교육청내 재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인원에 대한 향후 인력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조정되는 인력은 아무래도 본청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청에 일부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또 하나 시설관리업무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게 되면 이관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 비용관계 예산관계는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 주기만 했지만 돈을 본청에서 쥐고 있게 되면 사실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인 학교시설 관리 유지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그에 관련되는 예산도 당연히 이관될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사업 2011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런 부분의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게 보기는 좋은데 유지 관리한다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억대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에 누수가 된다든지 가장 큰 문제가 누수가 늘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방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그런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지역교육청으로 편성되거나 이체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바로 바로 줘요?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예산편성에서 이체하는 그러한 수순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관련 편성된 예산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업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중학교 시설사업을 교육장이 지금 관리했듯이 앞으로는 고등학교 시설사업을 지역교육장이 관리하게 되는 거구요.

학교 신설에 대한 큰 규모의 사업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초·중학교 일반 보수 유지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편성부터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올해 있는 예산은 9월 1일까지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9월 1일까지 계약된 것은 본청에서 갖고 그 이후의 사업은 다 지역교육청으로다 이관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은 항상 어떤 하자가 나왔을 때의 문제인데 하자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런 예산은 지금 현재도 어느 학교에 비가 샌다거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

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계상한 다음에 추경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초·중학교도 실제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은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언밸런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지금 현재하고 같은 거죠.

● **성영용 위원**

그런데 말만 지금 고등학교 유지 관리가 넘어가는 거지 초·중학교 유지 관리도 실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예산상은 달리하고 있어도 만약에 단양고등학교에 어느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가서 유지하기는 그런 모순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다 이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은 의회주의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미리 예산을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가서 예산은 편성이 될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일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유지 관리는 항상 사후에 처리되는 일이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누수되고 이런 데가 있다 이러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집행업무가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말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사후에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초·중등도 마찬가지이에요. 고등학교 넘어왔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거든.

형식상 외면상으로는 그래도 내면상으로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얘

기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서수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인력 재배치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충주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11, 특수학교 3개가 되는데 시설에 관한 업무를 관리과에서 하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재배치 컨설팅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획은 후속 조치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력 재배치라기보다도 업무 지금 말씀하신 위임사무에 관련되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일 위원**

고등학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보면 관리과 몇 개 시설담당 쪽하고 관리계 쪽이 늘 보면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감사기능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각이 나길래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인력에 대한 얘기는 성영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행하는 감사 중에는 시설관리든지 회계관리 또는 다른 관리업무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이야 도로 가져가도 괜찮은데, 학사업무하고 교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문제 이거는 도로 가져갔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

을 해 보는데, 짚어본다고 그러면 지역 교육장이 그래도 지역사람이 도입이 되어서 거기서 그 지역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인사 배치할 때에 큰 무리가 있지 않았는데 이게 도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또 인사에 대한 감사를 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 감으로 인해서 인사감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자체 내에서는 안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학사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전문직 인력이 지금 저희 감사파트에 한 명 있는데 전문직 또는 기술직 그런 인력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정기감사 이외에도 감사업무와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일단 지역교육청에 감사인력을 일부 본청으로 흡수해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이외에 여러 가지를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감사과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후속 인사 있을 때 그때 지금 말씀드린 지역교육청의 인사문제 또 학사문제를 본청에서 다룬다라는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될 수 있도록 크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과조치에서 보면 조례시행 전에 입찰 진행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는데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어떤 시기를 정해 준다든지 사안종결 여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내보는데 어떠세요?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경과조치 두 번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 진행중이거나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의미는 입찰 공고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입찰이 공고가 되면 경리관 등 계약주체가 확정된다고 봐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이관의 어려

움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찰 진행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칙에 명시한 이유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진행중인 사업의 이관이 어렵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완료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거 오해가 안생기겠어요?

생길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어색하지만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업자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아니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집니다. 중간에 이걸 옮겨놓으면 제일 큰 문제가 책임소재인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것만큼은 경과조치를 둬야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글쎄,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그 시기에는 입찰을 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아니 근데 일을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 그 사항까지만 저희들이 저기 하느라고 경과조치를 넣은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과정에서 걱정하는 분야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유념하도록 질의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책임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학교평가나 교원연수나 인정도서 개발 관계 연구원이나 직속기관으로 넘어가 잖아요. 업무에 대한 책임은 직속기관이 지고 실제 감독이나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글쎄요. 어느 쪽의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 **성영용 위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런데 통상의 경우 교육감이 항상 짊어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일차적인 책임은 그 집행기관에서 하고 이차적인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책임소재 한계를 명확하게 이럴 때 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업무를 명확하게 짓기가.....

● **성영용 위원**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나하나 책임소재를 여기서 정하기가.....

● **성영용 위원**

여기서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민해서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하자가 생겼다 어떤 평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해당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해당기관장이 책임을 지죠. 위임받았으면 위임받은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 **성영용 위원**

그걸 명시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아니 그거는 법에 다 나와있는 건데.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아마 지난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우리 지역조례에 반영하는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할 때 그전부터 얘기되어 오던 그러니까 관리·감독기능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지원 쪽으로 역할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은 바로 어디 교육청 이러던 기관명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데 반영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또 행정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전부터 교원단체들에서도 시·군단위 지역교육청들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던 요구와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주호 차관이 국회의원시절부터 교원단체들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지금 차관된 뒤에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도 그런 취지를 반영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선은 기구개편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혹시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정을 할 때에 혹시 관리과 쪽의 행정파트 인력을 줄이고 또는 본청으로 이렇게 또는 다른 이관되는 직속기관 같은 데로 재배치를 하면서 혹시 교육과 쪽의 장학직을 더 늘리는 쪽의 그런 재배치 검토도 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여쭙는 이유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종례에 얘기했던 관리·감독기능 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방향이 행정 아닌 교수학습지원 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각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은 행안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정원조정 할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협의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지난달에 발표된 개편방안을 보니까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되면서 지원업무도 강화된단 말입니다.

새로 교수학습지원이라든가 학부모지원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교육지원청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그냥 행정서포터만 하는 일이라면 지난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얘기했던 심부름센터 비슷한 잡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될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수학습 쪽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이 되려면 장학인력이나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직무들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인력들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인력문제라면 중앙부처에서 T/O 조정할 때 반영할 얘기지만 본도에서 이후 인력 재배치할 때는 그런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쪽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 감안을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저희들도 교과부에서 협의하고 그럴 때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금 늘어나면 전문직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직정원을 대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할 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걸로 간주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7명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7. .

위 원 장 서 수 웅 (서수웅)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6. 28. (월) 14 : 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폐지 규칙안 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第2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81

Ⅱ.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09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13시 50분

議事日程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 50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웅

5대 교육위원 마무리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알차게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꼭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3시 53분)

●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위원장 선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성영용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교육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성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금번 세입·세출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54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되,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늘 심사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 55분)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초과세입액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길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금 10개 과목에서 발생한 초과세입사업 1,112만 7,000원의 대부분은 2009년도 3회 추경 편성시점 이후에 연도 말에 수납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중 자산매각이 연도말 매각확정이 3회 추경 이후 보상금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수입금 및 기타잡수입의 경우 연간 수납액의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의 결산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바 정확한 세입예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산과 수납의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뭐죠?

● 재무과장 김길흠

3회 추경시점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 간사 성영용

지원금 같은 건 안그럴 텐데 기타 지원금 같은 건 초과 수납됐잖아요.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건 기정된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4억 3,312만 7,000원이 초과 수납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길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면 상당히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중등교육과 소관 65쪽입니다.

조국순례 및 학생독립기념행사 사업비로 올해 1,564만원이 반영됐네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런데 지난해에 결산액에 보게 되면 예산액에 대한 거의 64%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조국순례 및 학생독립기념행사에 대한 내용인데 매년 7월 3일날 기념일에 청주, 청원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독립운동기념일을 축하한다는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하는데, 2009년에는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모이는 한마당행사 예를 들어서 기념식하고 전시마당, 이야기마당, 문화마당 이런 것들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축하하는 홍보내용의 행사만 예를 들어서 애드벌룬을 띄운다거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그런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셨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101쪽 총무과소관인데 토지 매입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6,982만 5,000원 어떤 토지를 매입을 못한 건가요?

● 총무과장 황익상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본청 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관 옆에 토지를 746평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전 정리가 되면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듬해에 교육정보원이 확장됨으로 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납부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9쪽부터 나와있는데 학원 및 교습소관리가 산업정보평생과장님 소관이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예.

● 간사 성영용

교습소관리 사업비 중에 운영비라는 게 뭐에 쓰는 건가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 간사 성영용

아니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학원비 모니터링 활동요원 수당입니다.

● **간사 성영용**

모니터링하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모니터링하는 그 요원의 수당입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면 제가 한 지역교육청별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충주교육청은 어떻게 썼어요?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계신가?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충주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성영용**

오는 동안에 얘기드릴게요.

이게 아마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학원 및 교습소관리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게 홍보가 안됐든가 어떤 용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청주교육청은 230만원 중에 80만원만 쓰고 150만원이 불용됐고, 제천교육청은 180만원 전액, 보은교육청 45만원 전액, 옥천교육청 전액, 여타 교육청은 전부 전액 다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 관계인데 올해는 또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어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 **간사 성영용**

사업이 종료됐어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그거 대신 신고포상금제가 생겼습니다.

● **간사 성영용**

신고포상제로 한다고 해도 올해 같은 걸로 해서 차라리 세워서 정말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학원이나 사설교습소가 우리 교육청의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도시키면 좋은데, 포상제로 해서 이런 성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것이 애초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내용이라서요.

● **간사 성영용**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제대로 못했는데 충주교육청이 이 모니터링을 했는지 어떻게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사례발

표 어떻게 썼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과장님 좀 오시라고 했는데.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라기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서 학원비 모니터링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해당 학교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활동수당으로써 21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어떻게 썼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썼거든.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라기복

저희들은 충주가 학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 간사 성영용

충주교육청은 잘 했는데 다른 데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항목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도 좋은데 예산이 지원되면 본청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또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제일 먼저 항목별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결산서 515쪽 세입설명자료 중에서 미수납액 1억 9,649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자산임대료 수입이 8,619만원이 미수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무엇이었나요?

● 재무과장 김길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임대료 8,619만 6,000원은 단양 영춘초 동대분교 외 1개교의 폐교임대료로써 폐교임대 계약 후 계약 미이행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납액입니다.

● 김병우 위원

아, 폐교임대.

● 재무과장 김길흠

그 중에서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2,091만원은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지

연되었을 때는 나중에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치까지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병우 위원**

이후에도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탕감하는 수도 있나요?

● **재무과장 김길흠**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탕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되면 강제집행.

● **김병우 위원**

강제집행. 채무자 재력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길흠**

계속 독려해도 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럼 애초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확인이 덜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길흠**

계약할 때는 자기들이 입찰 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무슨 생산성이 아닌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 **재무과장 김길흠**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밑에 과년도 수입 1억 358만 5,000원 있는데 이것도 그전인가요?

● **재무과장 김길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과년도 1억 358만 5,000원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9,311만 9,000원하고 우리 교육청이 승소한 2건의 소송비용 197만 9,000원, 공유재산임대료 858만 7,000원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명퇴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 **재무과장 김길흠**

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한 2,3년 된 이야기인데 퇴직하고 나서 범죄사실이 밝혀져 환수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시로 세무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환수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것도 몇 년까지 안되면.....

● **재무과장 김길흠**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고지서를 발부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단되지 않고 저희들이 고지발부를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고지를 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압류할 것도 없고?

● **재무과장 김길흠**

예.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 세출결산조서 중에서 중등교육과 사업비 불용액으로 중등순회교사제 운영에 5,640만원 이것은 예산대비 해 보니까 31.6%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중등 순회지도비는 순회교사가 이동할 때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명목인데 관내에는 1회에 2만원, 타시·군 관외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농산촌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급수가 감소하는 그런 이유로 교사정원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3학급 규모의 8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촌 순회교사수가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횟수가 감소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통합학교군 예를 들어서 단산중고, 주덕중고, 보은여중고 등 순회하는 지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정현황이 9월에 결정이 되고 예산편성은 8월에 되고, 사실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겠고 또 부족분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애초에 좀 과도하게 책정을 했던 건 아니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과도하게는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상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예상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병우 위원**

8월에 예산을 짰는데 9월달 정원조정에서 약간 차질이 생겨서 교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네,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혹시 수업에는 지장 없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아무래도 교사수가 적으면 수업에 지장은 조금은 있겠죠. 상치교사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농산촌에 그렇게 순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해당 전공교과 교사를 순회해야 될 부분을 상치로 때웠단 말이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다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정원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2쪽 역시 세출결산조서 중에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운반급식학교 학교차량지원 사업비 108만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요 사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자체 조리교에서 운반급식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학산정보고에서 자체 조리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요구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럼 처음에는 어디에서 운반급식을 하려고 그랬었습니까?

자체 조리교였다가 다른 데에서 운반해 오려고 그랬던 걸, 그럼 어느 학교였어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거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지역사업비 중에서 운영비 집행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여러 교육청이 해당이 되는데 237쪽의 청원교육청 보니까 249만 5,000원 편성액대비 40.3%나 부족이 되어 있고, 또 260쪽에 보니까 보은교육청은 260만 2,000원 이거는 편성액대비 52.9%나 불용이 되어 있고, 옥천교육청은 283쪽 148만 6,000원 예산대비 59.5%가 불용되어 있고, 진천교육청은 329쪽 400만 3,000원 예산대비 52.9%가 불용되어 있고, 괴산교육청은 353쪽에 보니까 231만 1,000원 예산대비 43.6%가 불용되어 있고, 400쪽의 단양교육청을 보니까 405만원 예산대비 83.0%기 불용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 운영비라고 하는 건 뭘 하는데 쓰는 겁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정화위원회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것으로써.....

● **김병우 위원**

이게 정화위원회예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비 중에서.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그렇습니다.

그 정화위원회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많게는 83%까지 안쓰거든요. 이건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니었나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그런 건이 1년에 위원회 건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적어지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해당되지 않은 교육청은 정화위원회 개최가 많이 필요했었다는 건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유해업소가 주변에.....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그렇죠.

상대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는 정화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531쪽에 세출설명자료 중에서 불용액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직업교육에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로 7,211만 1,000원 중에서 92.7%인 6,687만 7,000원을 불용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되어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창업 체험코너 운영 중심학교 운영비에서 1,517만원과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및 작품전시회에서 2,898만

7,000원이 되고요, 청풍명월 직업교육 축제 전문계고교생 실습작품 제작비에서 2,272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공교롭게 직업교육이 신종플루 창궐 시기에 계획이 됐던가 보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그때 시기에 맞물려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옆에 있는 260만 6,000원을 예산 절감 했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거는 당초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내역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직업교육사업 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했는데 예산절감액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거는 사업과 관계없이 당초에 사업별 예산 수립한 것에 대한 자체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세웠던 예산액에서.....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절감계획이.....

● **김병우 위원**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아예 절감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예를 들면 올해는 예산 5% 절감, 10% 절감 뭐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564쪽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실적 중에서 행정예산과 소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시설확충비를 보니까 314억 1,373만 5,000원을 명시이월 받아서 241억 3,940만 3,740원을 집행을 하고 29억 4,163만 4,000원을 다시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43억 3,269만 7,26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에 관한 예산인데 그게 '08년도에 333억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08년도에 설계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 지역의 제천여고하고 충주여고는 기숙형고등학교 지정이 교과부로부터 유보됐습니다.

유보되어서 그 2개 학교의 89억은 하나도 집행이 안하고 전액 명시이월 시킨 거고, 그게 '09년도에 와서 아직 교

과부에서 지정이 늦어져 가지고 어차피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아, 제천여고하고 충주여고.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예산을 '08년도에 세운 거를 전액 못 쓰고 '09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늦게 추진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중에서 또 29억은 또 이월했어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작년도에 바로 연초에 추진했으면 다 되는데 교과부에서 지정이 늦어져 가지고 기다리는 와중에 했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져 가지고 올해 6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된 43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거는 총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이니까 330억인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된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이거는 반납하는 건 아니고.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저희들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574쪽에 보니까 역시 제천교육청의 다목적교실사업비 역시 명시이월 받아서 일부를 집행하고 또 일부를 또 다시 이월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천 신백초 다목적교실 강당예산인데요. '08년도 3회 추경 때 세운 거기 때문에 '09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또 다시 이월했어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게 '09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서.....

● **김병우 위원**

1년 만에 다 못해서.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렇죠.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좀 일

반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시기에 후보들간에 토론이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기가 그래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1,800억이 넘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후보가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있는가 그 중에는 이월사업비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의 10%가 넘게 1,983억 9,561만 1,93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액의 10%가 넘게 그야말로 쓰고 남은 돈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넘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2009년도에 1,984억 8,923만 8,330원인데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0.3%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그 정도는 나옵니다.

● **김병우 위원**

보통 금년에도 잉여금이 전체 3,00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세계잉여금이 그 중에서 이월재원을 빼고 국고보조금 잔액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1,983억이 넘는다는 건데, 이것이 물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요 정도는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고 하는 걸 제가 분석한 걸 봤어요. 그것이 혹시 예산절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예산절감 10% 그거하고는 어느 정도 관련이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예산절감은 작년도에도 10% 했었고 재작년에도 10%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10% 남는데 예산절감 10%는 그렇게 관계 있지는 않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여기에 물론 영향은 있죠. 몇 %정도는 영향이 있죠.

● **김병우 위원**

10% 예산절감은 경직성 경비에선 예산절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경직성 경비는 안들어갑니다.

● **김병우 위원**

사업비 중에서 예산 절감한 건데, 제가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예산절감액 정도는 47억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봤어요. 10%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실제 절감한 건 47억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봤어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사업성 경비여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불용액이 1,900정도 발생한 것은 그 중에서 예비비가 790억 정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4%가 넘는 예비비가, 그게 교과부에서 3회 추경 때 연도 말에 많이 배부해 가지고 지난해 3회 추경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예비비가 790억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지면 물론 1,900억 이월금은 많은 건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한 790억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해 두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방교육채라든지 이런 채무상환에 금년에는 하나도 안썼던 것 같아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은 교과부에서부터 국고로 지원해 줄 예산액을 재원을 못 주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재원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상환을.

그러니까 그거는 국고에서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보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 가지고 지금 쓰면 그만큼 다른 타 사업을 못하는 거죠.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불용액과 예산전용에 중점을 두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대부분 의혹이 해소되는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과 예산전용이 없을 수는 없되 비율이 높았던 것 중에 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간단한 거니까 47쪽 보면 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의 불용액

이 예산액 대비 36% 그 정도나 불용액이 생겨야 했던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하나 더 48쪽에 보면 특수교육 연수비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4.4%나 돼요.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가 36.05% 이렇게 높게 불용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초등교육과의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정원이 1명이 있습니다. 5년 동안 퇴직을 안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고 4대 보험료도 있고 연가보상비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이게 다 지출되는데 5년 동안 계속 퇴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이걸 한꺼번에 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용율로 계속 남을 수밖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불용액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저축해 놓은 거예요.

● **서수웅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만 가지고 볼 때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또 하나 특수교육 연수사업입니다.

당초 영동대에다가 원격연수로 우리가 900명을 당초계획으로 위탁 원격연수를 협약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격연수에 약 700여명이 참여해서 200여명이 연수를 이수하지 않아서 4기에 걸쳐서 하는데 한 200명이 영동대에서 자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절감된 것의 하나는 영동대에서 1인당 7만원씩 연수비를 책정해서 하던 것을 6만원으로 연수생들 많이 참여하라고 6만원으로 다운해서 만원씩 다운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수기관을 꼭 영동대에만 4기로 나누어서 원격연수로 할 것이 아니라 청주교대나 단재교육연수원이나 아니면 공주대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연수 계획된 인원을 소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이해는 가는데 꼭 그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지 인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 건지 더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노력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요거하고 관련이 비슷한 건데 산업정보평생과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정보화연수 사업비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3.4% 똑같네요. 이것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교과부 주관 사업인데 교과부 당초 계획대비 연수과정이 교과부 자체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 207만원이 지급되어서 불용액이 1,440만원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로부터 하는 사업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 놨던 건데 교과부 자체에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 **서수웅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정도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 **서수웅 위원**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산 전용이 적을수록 사실은 예산운영이 잘됐다고 보는 건가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 **서수웅 위원**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 416쪽서부터 421쪽 사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목간 예산 전용사유로 16건의 15억 3,391만 4,000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사유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뭐냐하면 착오입력에 의한

과목정정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전용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입력을 잘못해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인지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업내역을 보면 전용 전에 그 목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과목을 잘못 입력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발견되어서 바로 연초에 전용을 잘못된 것을 정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일종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건데 예산상은 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용으로 한 사안입니다.

● **서수웅 위원**

엄밀히 따지면 전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을 정정했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렇다면 입력한 사람 오류입니까, 프로그램오류입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상응한 대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상벌차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담당자들이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 **서수웅 위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워낙 예산서 부피가 많기 때문에 급히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앞으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용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실제로 전용이 아니면서 전용으로 나타나서 보기가 그렇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421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우수교 공모신청 시 사립학교 미접수로 인하여 공립학교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 신청이 없는 사유가 뭐예요? 왜 사립학교는 신청이 없느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없었던 사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전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사학지원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전용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 계획으로다는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계략적으로 공립과 사립에 대한 학교수를 정하는데 대개 비례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모를 하다보면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쏠림현상이 생기니까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사학지원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거는 불가항력이겠네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저희들로서는 이게 미리 공모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반대로 공립에서 적고 사립에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이거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제로 제가 살펴볼 때 처음에 불용이 됐던 전용이 됐던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현액이 1조 9,361억 4,1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는 큰 예산으로 늘어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의 획기적인 편성과 효율적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불용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예산 현액 대비 10.3%인 1,984억 8,923만원으로 전년도 14.6% 2,073억 705만원보다 4.3% 감소했어요. 상당히 잘됐다하는 느낌이 들고, 이월액을 보니까 5.4%인 1,094억 9,252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01건에 1,040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10건에 54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도 113건보다 12건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14건보다 4건이 감소했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고이월 중에서 일부 사업을 보면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단지 한 두 달이나 세 달만에 동절기고 그러니까 다음 해로 대개 사고이월 되죠.

그런데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공기가 촉박했을 때 그냥 사고이월하지말고, 명시이월하는 것하고 사고이월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 겁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올해 회계연도 안에 끝낼 걸로 가능했던 사업인데 부득이 공사현장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를 못 맞췄을 때 의회는 끝났고 그랬을 적에 사고이월 처리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나 공기로 봐서 이거는 금년도에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잖아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런 거는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사전에 끝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명시이월을.....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계약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물건의 공사비의 단기나 뭐로 봐서 유리한 건지, 공사를 못 맞출 줄 알면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잘 판단이 안서서 묻는 겁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거는 사업시기상 문제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를 빨리 끝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조기에 하는 것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익년도에 물가가 어떻게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크지 않으면 지수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약을 해놓으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으니까 더 이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로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상당히 줄어들어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럼에도 두어 건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어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의 교육국 학교정책과 사업에 방과후학교 운영 보전금난에 보면 1,772만 7,30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요게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무제도 활용 강사제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1명씩 11명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을 잘 배정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6명밖에 못썼어요. 그게 남은 돈입니다.

● **이상일 위원**

대개 공익요원 중에서 대학을 나왔다든지 대학에 재학중이라든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써야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청주교육청 교원역량강화사업에서 교원정보화 연수비가 28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세요.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이영희**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당초 계획은 ICT활용 독려 장학과정 2개반, 미래로 가는 교육 3개반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ICT 활용 독려 장학과정 1개반, 미래로 가는 교육 2개반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애초에 판단을 할 때 그 인원이 있을 거라고.....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이영희**

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상일 위원**

사전에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거 안 해 보고 그냥.....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이영희**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 연수를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상일 위원**

왜냐 하면 연수비가 다 써야 될텐데 연수비가 남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청주교육청 재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 위원님 남겨놓고 있는데, 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이상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셨는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초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원연찬회 사업비 중 여비예산 1,453만 5,000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위에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지출된 걸로 나와있는데 어째 여비만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당초에 단재교육원에 우리가 연수예산을 위탁해서 전체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여비는 학교단위에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저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됐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연수나 모든 연수는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여비를 주고 자격연수만 도교육청에서 별도 책정해서 지난 정기회에 교육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자격연수만 일정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규정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 줘야된다 그래가지고 이중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여비 계상해서 학교로 넘어갑니까?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학교로 쪼개서 가다보면 작은 액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83쪽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풍명월 직업교육축제 사업비 책정액이 예산 현액 대비 48.5%인 2,277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왜 이렇게 절반 가량 예산이 남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시기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행사가 많아서 그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럼 사학지원비가 20%도 안돼요 따져보니까. 예산 남은 사학에는 지원이 왜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내용에 불용액 가운데 사학지원비가.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거는 여비가 되겠는데요.

● **정무 위원**

청풍명월 직업교육축제 여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인데 사학지원비는 535만 중 91만원만 지급하고 444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거는 학교대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참여도를 봐서 여비가 전출금하고 해서 학교로 가는 건데, 그 청풍명월 직업축제를 실제로 해보면 사립학교의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증축사업비 13억 5,375만원은 당초 예산으로써 이월사유를 보면 건축부지 미결정으로 인한 설계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서원대 부지에다가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추가 공사비가 약 4억 내지 5억이 들고 서원대하고 공동 사용하는 문제로 대학측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여상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여상 운동장 일부에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주여상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그것을 중재해야 될 법인의 문제가 아시다시피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독려하는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결정을 빨리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여하기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과장님 지금은 건축부지가 결정이 됐는가요?

● **시설과장 박민수**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정무 위원**

빨리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청원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외천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비가 4,276만 4,000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김석재**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적은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 외천초 리틀야구장 조성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도 같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외천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천초 저희가 리틀야구장 조성공사를 같이 겸임하게 됐습니다.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 **정무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김석재**

공사를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 **정무 위원**

외부환경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김석재**

교실 내부 리모델링 쪽입니다.

● **정무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김석재**

알겠습니다.

● **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인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문제인데 425쪽부터 428쪽에 들어있을 겁니다.

예비비가 26억 7,586만 9,000원을 지출하셨는데 그 중에서 피해복구비 또는 신종플루에 따른 경비, 선거관리비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되겠는데, 끄트머리 보면 428쪽에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2억 3,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배상금 2억 3,000은 2007년도에 제천의 모 유치원생이 방울

토마토 먹다가 목에 기도가 걸려서 학생이 다친 사고인데요.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갖고 작년도에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3억 3,000을 배상해라 그런 판결이 나와서 이자까지 합하면 3억 8,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억 5,400을 지원했고 예비비에서 2억 3,000만원 그래서 3억 8,400만원을 배상한 그겁니다. 제천의 유치원 원아 방울토마토 사건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혹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라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학생건이라면 저도 같이 동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병우, 서수웅,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 별책부록

► 200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본회의 별책 2)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7. .

위 원 장 김 부 웅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6. 29. (화) 14: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